

## 2024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원) 채용 공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2024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 I 채용개요

#### 1.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처        |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기간제근로자 | 보호경비원 | 여자 1명 | 담당업무<br>참고 |

#### 2. 담당업무

○ 보호경비원 : 보호외국인 관련 전반 업무 지원\* 등

※ 보호외국인 감시, 호송 및 계호, 입·퇴실지원 및 검신, 순찰 및 경비, 면회업무 및 물품 정리, 외국인 보호업무 관련시설 안전관리 등 보호 관련 전반적인 업무 지원 등

### II 응시자격

#### 1.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근무예정지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부산 중앙동)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관사 제공 없음]

#### 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면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등의 취업제한 등)

## 2.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관련분야(계호·경비) 근무 경력자 (최소 경력 1년 이상)
  - ※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경력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무도자격증(태권도, 유도, 검도) 2단 이상 보유자
  - ※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에 한함(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발급 단증에 한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취득분까지 인정)
- 외국어 능력 우수자 (영어, 중국어에 한함)
  -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서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어학자격증은 '19.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함
  - ※ 어학자격증 2개 이상(서로 다른 언어에 한함)인 경우와 어학자격증 1개인 경우 차등 우대
  - ※ 인정기준 : 영어(TOEIC 700점 이상 등)\*,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

### \* TOEIC 외 영어시험 인정 범위(최저 기준)

| 시험 구분 | TOEIC | TOEFL |     | TEPS<br>(‘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       |       | PBT   | IBT |                           |            |      |
| 취득 점수 | 700   | 530   | 71  | 340                       | 65(LEVEL2) | 625  |

※ 동일 언어에서 검정 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 1가지만 부여

-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 ※ 1급 또는 2급 : 보건복지부(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자격증에 한함(합격확인서 포함 제출)

## 3. 가점사항 [서류전형/면접시험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구분       |                                                                                                                                                                                                      | 부가 점수                         |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br>「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br>「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br>「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br>「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br>「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
| 사회 형평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                                                       |
|-----------------------------------------------------------------------------------------------------------------------------------------------------------------------------------------------------------------------------------------------------------------------------------------------------------------------------------------------------------------------------------------------------------------------------------------------------------------------------------------------|-------------------------------------------------------|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b>【가산점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br/>(금번 채용은 채용분야별 각 모집인원이 4명 미만으로 법정가점 미적용)</li> <li>■ 법정가점과 사회형평가점은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li> <li>■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임</li> <li>※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야 함</li> </ul> |                                                       |

## III 근로조건

- 신 분: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
- 근무시간 : 주간(1주차) - 야간(2주차) - 야간(3주차)
  - 주간(1주차:월,화,수,목,금) 07:30~18:00(휴게1시간)
  - 야간(2주차:월,수,금,일<sup>※</sup>) 18:00~익일07:30(휴게1시간+심야휴게4시간)
  - 야간(3주차:화,목,토<sup>※</sup>) 18:00~익일07:30(휴게1시간+심야휴게4시간)
  - \* 토, 일 07:30~익일 07:30(휴게2시간+심야휴게4시간)
  - ※ 근무형태 및 근로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기관 및 예산사정 등을 평가한 후 결정
- 급여기준 : 월 2,678,050원(기본급+급식비 포함, 세전), 명절휴가비 별도
  - ※ 계약서 작성 시 임금 조건 안내 예정
  - ※ 기타 근로조건 및 보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법무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등에 따름
-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 Ⅳ 채용일정 및 방법

### 1. 채용일정

|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br>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br>발표    |
|-------------------------------|-------------------------------|----------------|----------------|----------------|
| '24. 4. 12.(금) ~<br>4. 18.(목) | '24. 4. 15.(월) ~<br>4. 18.(목) | '24. 4. 24.(수) | '24. 4. 26.(금) | '24. 4. 30.(화)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함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사전 통지

### 2. 채용방법

#### ○ 제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초과 응시한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5배수 이하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최종 후순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이하 응시한 경우, 응시자격·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격 여부에 따라 합격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50점(차등 적용)
- 관련 분야 근무경력 : 20점 (경력별 차등 적용)
- 무도자격증 : 10점 (급수별 차등 적용)
- 어학자격증(영어, 중국어에 한함) : 10점
  - ※ 어학 자격증 2개 이상(서로 다른 언어에 한함)인 경우와 어학 자격증 1개인 경우 차등 적용
  - ※ 동일 언어에서 검정 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 1개지만 부여
- 응급구조사 자격증 : 10점 (급수별 차등 적용)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 ○ 제 2차 시험 : 면접시험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평정 요소

- |                    |                |
|--------------------|----------------|
| ①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위로 최종합격자 결정

## V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나라일터에서 내려받아 사용
- 접수기간: 2024. 4. 15. (월) ~ 2024. 4. 18. (목)
-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에 한해 인정)
  -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 우편 접수시,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 응시원서 접수증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직접 교부(불합격자 별도 회신 없음)
  - ※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접 수 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3층 총무팀
  -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2-1 (우편번호 : 48940, 전화: 051-461-3092,3096)

## VI 응시자 제출서류

-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 1]
- 응시원서 1부 [별지 2]
- 이력서 1부 [별지 3]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 (※ 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은 기재하지 말 것)
-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5]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7]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별지 8]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9]
- 우대요건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관련분야 근무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함께 제출)
  - 무도 자격증 사본 1부
  - 어학성적표 등 사본 1부
  -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합격확인서 포함) 1부
  - 법정가점 및 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 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확인 불분명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상기 기간이 명시된 경우와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만 인정

## VII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총무팀 ☎ 051-461-3092, 3096)

[별지 1]

제출 서류 총괄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 목록                                          | 제출 | 미제출 |
|---------------------------------------------|----|-----|
| 1. 제출 서류 총괄표 [별지 1]                         |    |     |
| 2. 응시원서 [별지 2]                              |    |     |
| 3. 이력서 [별지 3]                               |    |     |
| 4. 자기소개서 [별지 4]                             |    |     |
|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5]                           |    |     |
| 6. 주민등록등본                                   |    |     |
| 7. 주민등록초본                                   |    |     |
|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6]                    |    |     |
|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7]                   |    |     |
| 10.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별지 8]                  |    |     |
| 11.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관련 체크리스트[별지 9]  |    |     |
| 12. 관련분야 근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포함) |    |     |
| 13. 무도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     |
| 14. 어학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     |
| 15. 응급구조사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합격확인서 포함)            |    |     |
| 16. 법정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
| 17. 사회형평가점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     |

2024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2]

응시원서(원본)

본인은 2024년도 제3회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               |      |              |      |
|---------------|------|--------------|------|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 (한자) |
| 주민등록<br>번호    | -    | 복수국적<br>해당여부 |      |
| 주 소           | (☎ ) |              |      |
| 전자우편          |      |              |      |
| 전 화<br>(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응시표

2024년도 제3회 기간제 근로자(보호경비원) 채용시험

|                              |      |      |  |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 성명                           | (한글) | (한자) |  |
| 2024년 월 일<br>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 |      |      |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 3]

## 【 이 력 서 】

### 1. 인적사항

|        |      |      |      |    |
|--------|------|------|------|----|
| 성명     | (한글) | (영문) |      |    |
| 생년월일   | 년    | 월    | 일 (만 | 세) |
| 주 소    |      |      |      |    |
| 연락처    | (본인) |      | (가족) |    |
| e-mail |      |      |      |    |

### 2. 경력사항

| 근무기간 | 직장명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격사항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
|      |      |      |      |      |      |
|      |      |      |      |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 \_\_\_\_\_(서명)

[별지 4]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배우자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장과정, 지원동기, 특기사항 등 기재(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 1장이 넘어갈 경우 별지에 작성하되, 총 2페이지 이내로 작성

[별지 5]

직 무 수 행 계 획

성    명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직무수행 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역량: 조직 이해도,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업무역량: 행정업무 역량, 논리력, 의사소통능력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크기 제목 15p, 본문 14p, 줄간격 180%)

2024년    월    일

작   성   자   :   ○ ○ ○                    (서명)

[별지 6]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                    |                                                |
|--------------------|------------------------------------------------|
| 개인정보<br>수집 · 이용 목적 | 당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진행 및 임용을 위한<br>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 개인정보<br>수집 · 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메일, 학력, 경력,<br>자격사항 등     |
| 개인정보의<br>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제3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근로자(보호경비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무부에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3.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      |                   |
|--------|-----------|------|-------------------|
| 성    명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br>(보호경비원) |
| 생년월일   | .   .   . |      |                   |

본인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시행 2024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  
(보호경비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  
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  
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 ·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 8]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본인은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기간제 근로자(보호경비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 <결격사유 >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별지 9]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                                                                                                   |
|---------------------------------------------------------------------------------------------------------------------------------------------------------------------------------------------------------------------------------------------------------------------------------------------------------------------------------------------------------------------------|---------------------------------------------------------------------------------------------------|
|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br>「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br>(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br>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br>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br>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br>※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br>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br>⇒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br>⇒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